

# 「2021 바이오 기업인의 날」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

## 1. 포상 개요

### □ 목 적

- 바이오분야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발굴·포상함으로써 바이오 기업인 사기진작 도모

### □ 포 상 훈 격
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0점

### □ 일 시 및 장 소

- 일 시 : 2021년 12월 중
- 장 소 : 미정

### □ 대 상

- 수출증대, 고용창출, 지역발전 성과를 도출하여 바이오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기업인 및 관계자(임직원 포함)

- (업종)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(KS J 1009)에 따른 8개\* 업종

\* 바이오의약산업, 바이오화학·에너지산업, 바이오식품산업, 바이오환경산업, 바이오 의료기기산업,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, 바이오자원산업, 바이오서비스산업

\* (참고) <https://www.kbiois.or.kr/portal/intro/categoryInfoPage.do>

- (부문) 수출증대, 고용창출, 지역발전 3개 부문

## 2. 신청(추천) 자격 및 추천제한

### □ 신청 자격

- 바이오분야 공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,
  - 수출증대, 고용창출, 지역발전 등에서 전년대비 향상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인 또는 관계자

### □ 추천제한

-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  - \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  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    - \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 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    - \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-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그 임원
  - \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
  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 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 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   - \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  - \*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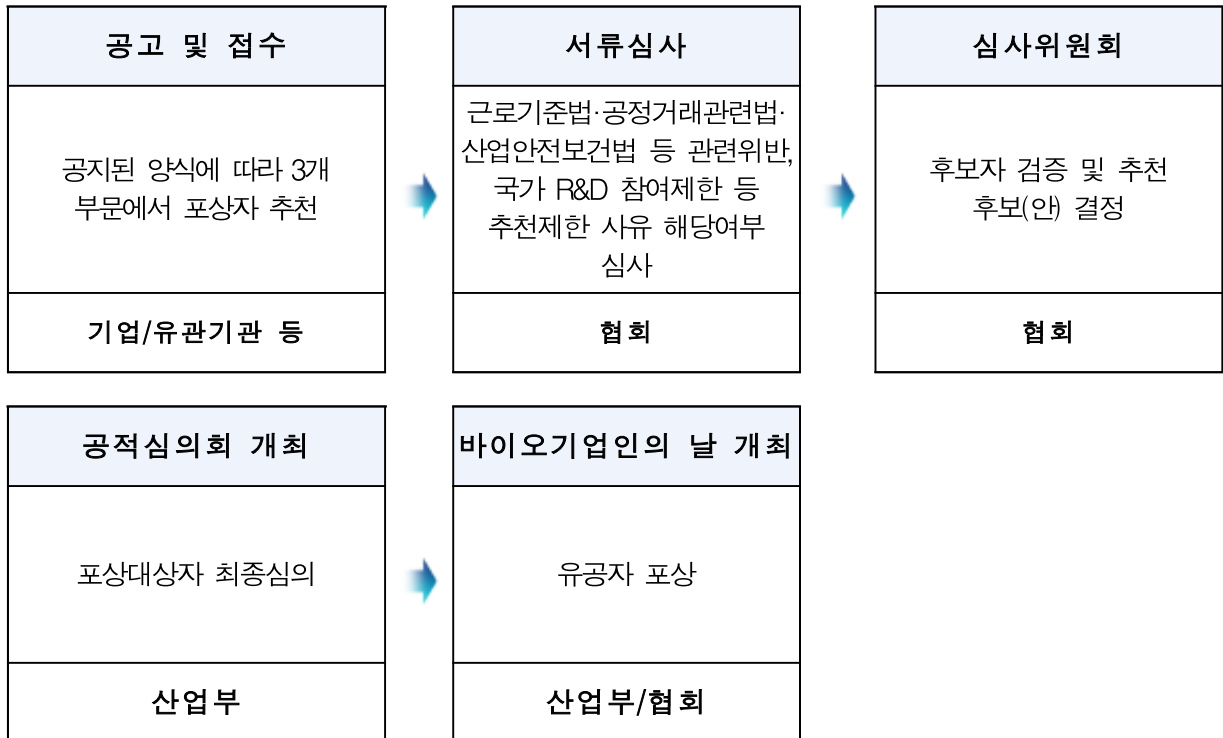
## □ 기타 유의사항

-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,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
-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처리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
- 표창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포상 철회 또는 취소 될 수 있음

### 3. 추진절차 및 심사기준

#### □ 추진절차

- 신청접수 → 서류심사\* → 심사위원회(포상 대상자 후보결정) → 공적심의회(포상 대상자 최종심의) → 바이오기업인의 날 개최(포상)
- \* 필요시, 성과 증빙자료 확인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



#### □ 심사기준

- 심사는 정량항목과 정성항목으로 구성하고,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  
도출 후 최고점 순으로 후보자 결정
  - (정량항목) '19. 3분기를 기준으로, 신청자로부터 '20년 3분기 이후  
부문별 향상된 성과도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정
  - (정성항목) 각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 
평정
  - 심사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시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 
있으며, 접수 현황을 바탕으로 업종·부문별 포상 수 결정
  - 벤처기업\*의 경우, 각 부문의 세부항목 평가점수에서 5% 가산점 부여
- \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 등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 
발급받은 기업

부문	심사기준		
	세부항목	비중	비고
수출 증대	· (정량) 수출 증대	35%	
	· (정량) 수입 대체	35%	
	· (정성) 산업 발전기여 등	30%	
고용 창출	· (정량) 인력 고용	30%	
	· (정량) 청년 채용	20%	34세 이하
	· (정량) 사회적 취약계층고용	10%	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
	· (정량) 고용 유지율	10%	6개월 이상 고용 유지
	· (정성) 고용창출 기여 등	30%	
지역 발전	· (정량) 제조·연구 시설 투자	35%	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을 제외한 지역 대상
	· (정량) R&D 투자	35%	
	· (정성) 지역발전 기여 등	30%	

## □ 신청(추천)서 교부 및 접수

- 관련양식 : [첨부] 참조
- 접 수 처 :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육성부문 담당자
- 접수방법 : E-mail ([koreabio4@koreabio.org](mailto:koreabio4@koreabio.org)) 접수
- 접수기한 : 2021. 10. 05(화) ~ 10. 29(금) (E-mail 수신기준)
- 문 의 처 : Tel. 031-628-0013, 0036

## □ 제출서류 안내

- 제출서류
  - 신청서(서식 1)
  - 공적조서(서식 2)
  - 장관표창 동의서(서식 3)
  - 사업자등록증
  -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
  - 시상 후보자 이력서 (자유양식)